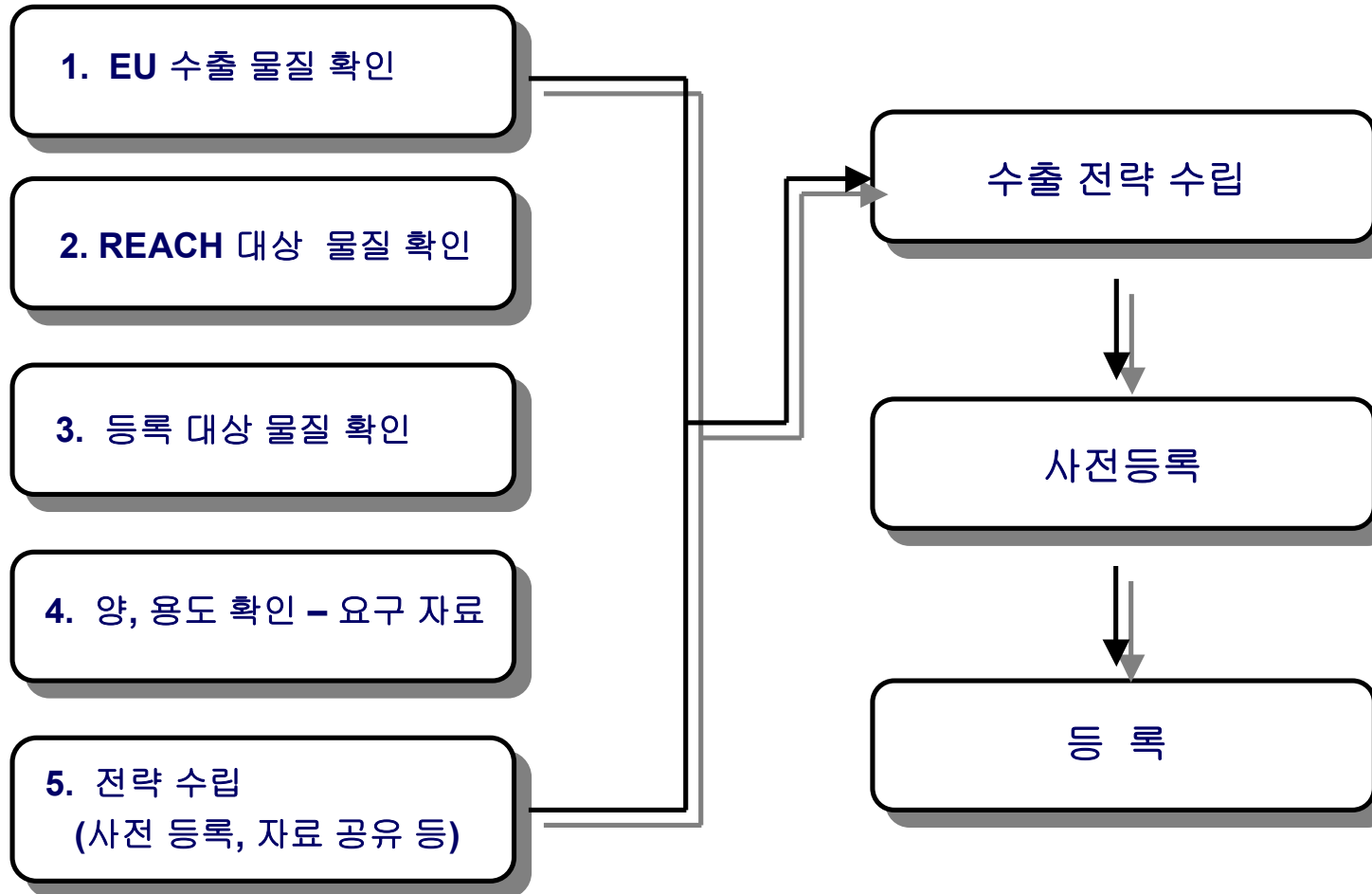




**REACH 등록대상
물질선별 및 확인절차
2007. 6. 12.
정 옥 선**

1. 등록 전략 수립 절차



2. 대상물질 확인 방법

1. 법 적용 배제 확인



2. 등록 제외 대상 확인



3. 물질(substance)정의 확인



4. 적용대상 양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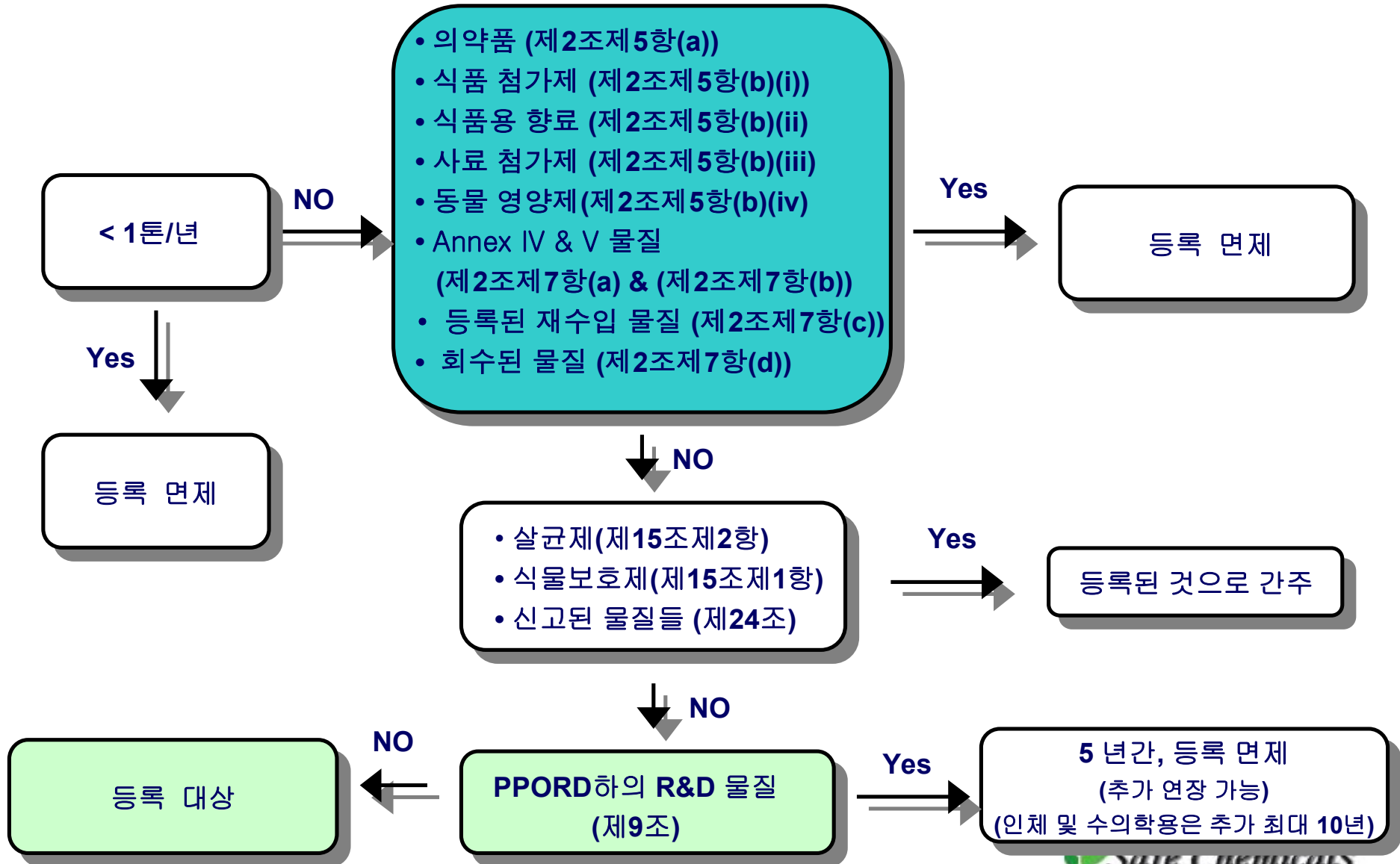


5. Article의 경우 등록/신고 대상 확인

3. 적용 대상 - 적용 배제



4. 적용대상 - 등록 제외



5. 물질 (substance)

■ 정의 (제3조 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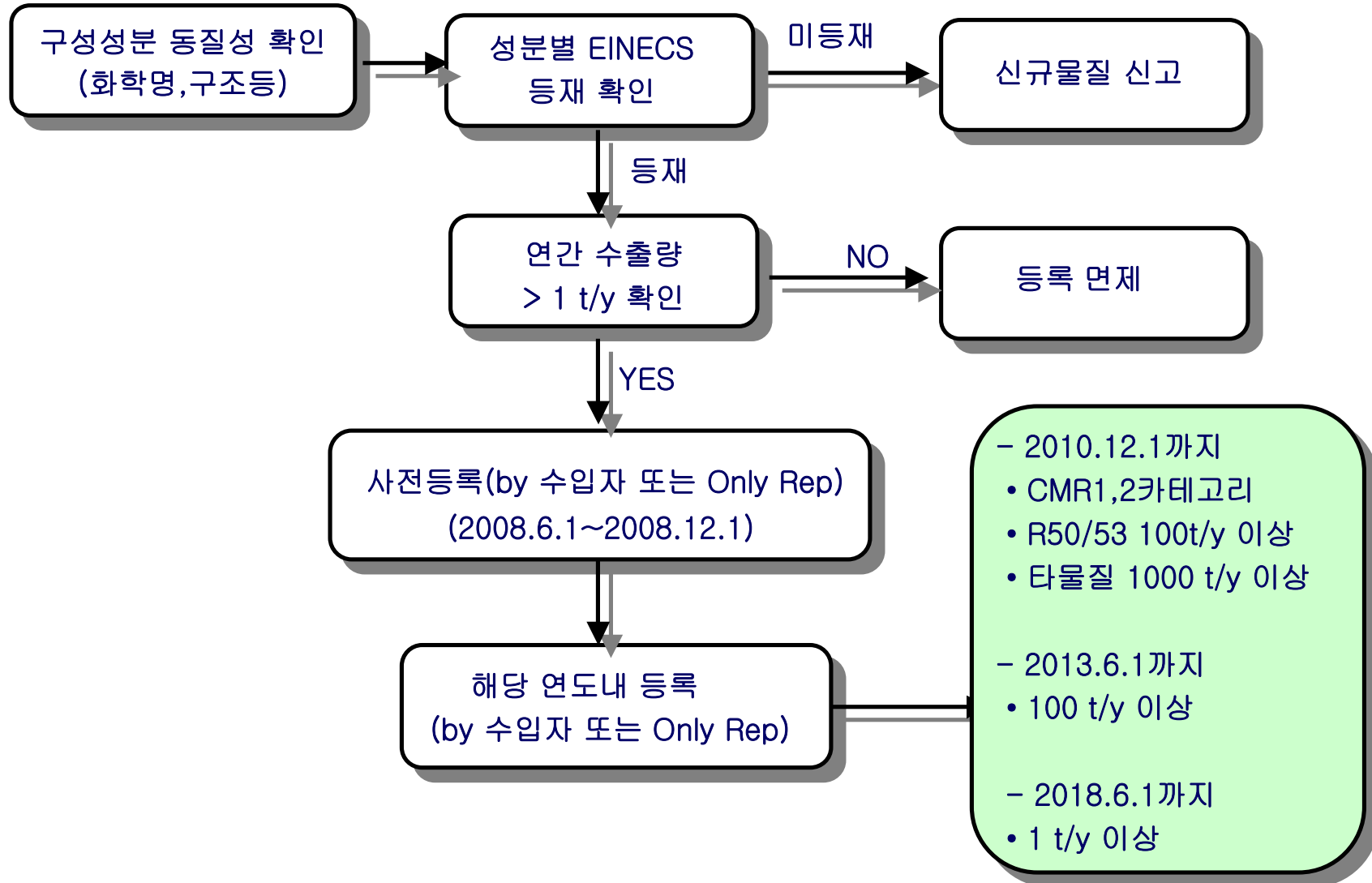
-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첨가물과 사용된 공정으로부터 발생된 불순물을 포함하는 자연상태 혹은 제조 공정에서 얻어진 화학적 원소 및 그 화합물.

(물질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조성을 변형시키지 않고 분리될 수 있는 용제는 제외)

6. 물질 동질성 파악

- 등록 대상 물질이 반드시 **EINECS**에 등재되어 있을 것 - 미등재 경우 신규물질 등록 절차
 - * **EINECS**: 기존화학물질목록(1979-1981년)
 - * **ELINCS**: 신규화학물질 리스트(1981년 이후 신규화학물질 신고 - 유해성 심사완료 된 것)
- 동질성 확인 자료
 - 물질명(IUPAC/CAS/기타 확인 명칭)
 - 분자식 및 구조식 (분자량 또는 분자량 범위)
 - 이성체 관련 정보
 - 순도
 - 주요 불순물의 조성 및 비율(%)
 - 첨가제의 특성 및 비율(%, ppm)
 - Spectra
 - 동질성 파악에 필요한 분석방법/인용 문헌

등록 대상 물질 확인/등록 절차 예 1 (혼합물(조제))



7. EINECS 화학물질목록 예

- EU EINECS(European Inventory of Existing Commercial chemical substances)
<http://ecb.irc.it/esis/>

CAS NUMBER	EINECS No.	INVENTORY NAME	FORMULA
8030-89-5	232-449-5	Pyroligneous acids, reaction products with Et alc., distillates	COMPONENT A: 8030-97-5 COMPONENT B: 64-17-5
90268-51-2	290-853-7	Butanoic acid, 3-oxo-, ethyl ester, reaction products with propylene glycol	COMPONENT A: 141-97-9 COMPONENT B: 57-55-6
7447-39-4	231-210-2	Copper chloride (CuCl₂)	CuCl₂
7758-89-6	231-842-9	Copper chloride (CuCl)	CuCl
1344-67-8	215-704-5	Copper chloride	Unspecified
1330-20-7	215-535-7	xylene, mixed isomers , pure	C ₈ H ₁₀
95-47-6	202-422-2	o -Xylene	C ₈ H ₁₀
8002-74-2	232-315-6	Paraffin waxes and Hydrocarbon waxes	

7. EINECS 화학물질목록 예 (계속)

- CAS NUMBER: 65996-86-3
- EINECS No.: 266-020-9
- INVENTORY NAME(S):
- Extract oils (coal), tar base (EINECS)
- DEFINITION:
- The extract from coal tar oil alkaline extract residue produced by an acidic wash such as aqueous sulfuric acid after distillation to remove naphthalene. Composed primarily of the acid salts of various aromatic nitrogen bases including pyridine, quinoline, and their alkyl derivatives. (EINECS)
- FORMULA:
- Unspecified

*** STRUCTURE DIAGRAM IS NOT AVAILABLE ***

8. 고분자의 정의 (제3조 5항)

- 한가지 이상의 단량체 단위(monomer unit)의 배열로 특징지어진 분자들로 구성되는 물질로서 아래의 사항을 만족하는 것
 - 분자량이 분포하고(단량체 단위의 수에 따라 분자량이 다름),
 - 최소한 1개 이상의 단량체 단위나 다른 반응물과 공유결합되어있는 최소한 3개 이상의 단량체 단위를 포함하는 분자의 무게가 과반수 이상 이며,
 - 동일한 분자량을 가진 분자의 무게가 과반수 미만

9. 고분자 관련 질의 응답 (Q&A 2.10-2007.2)

- 고분자 자체는 등록 대상이 아님 (허가나 제한 대상은 될 수 있음)
- 고분자에서 실제로 등록해야 할 것 (제6조제3항)
 - 고분자를 구성하는 단량체 중 2% 이상 포함된 것
 - 미반응 단량체는 등록 제외
 - 용제가 포함된 고분자 용액 또는 조제의 경우,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용제는 제외
 - 고분자를 함유한 조제의 경우, 안료, 안정제 등 첨가물은 대상

10. Articles (제7조)

■ 등록

- 완제품 내 해당 물질 > 1톤/년
- 사용조건에서 의도적 배출

■ 신고

- 완제품 내 해당 물질 > 1톤/년
- 57조 및 59조 제1항에 규정된 물질이 0.1% (w/w) 초과 함유된 경우
- 적절한 차단 조치가 있을 경우 신고 면제

■ ECHA는 다음의 경우 등록 요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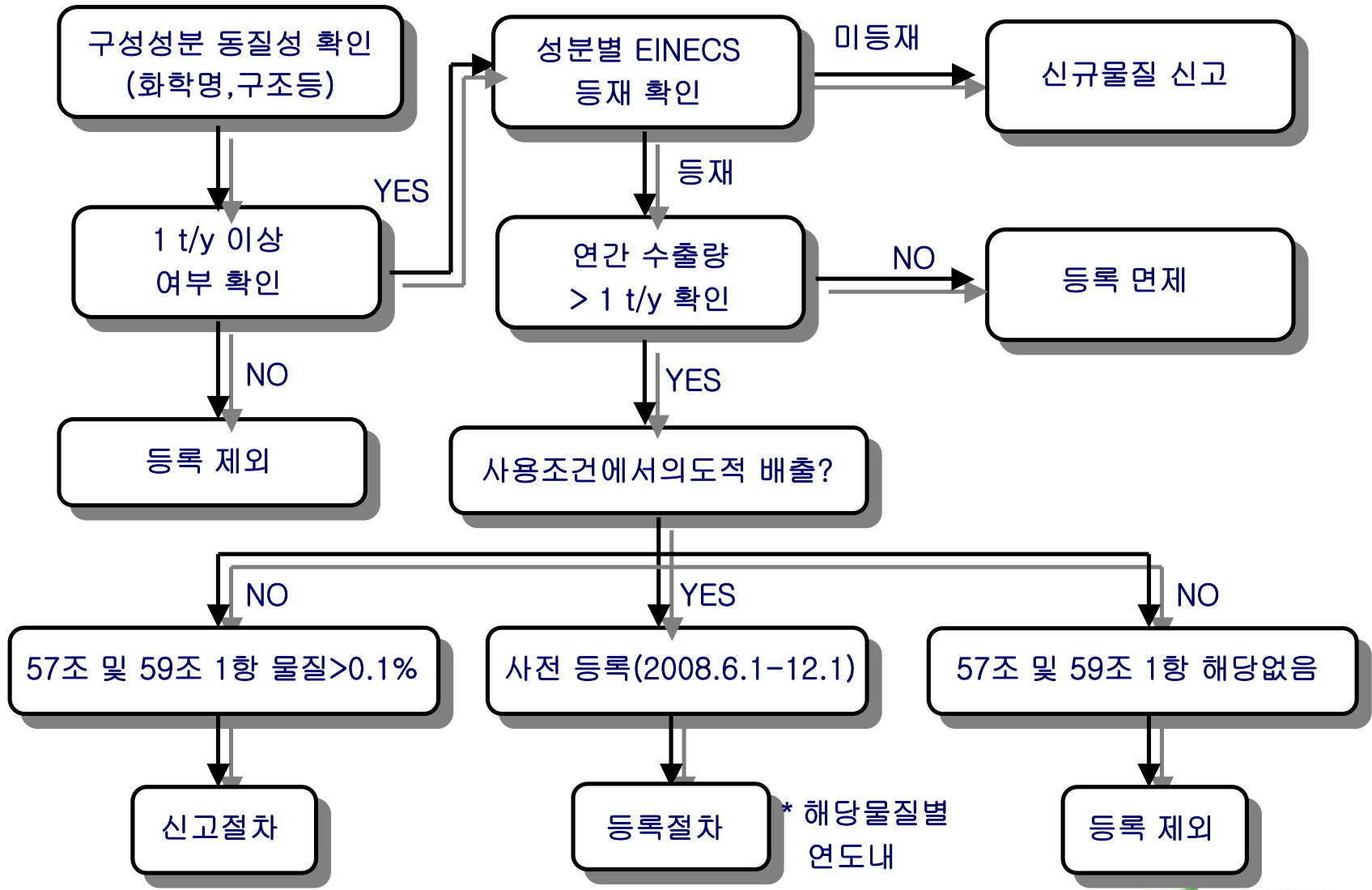
- 해당 물질이 연간 1톤을 초과할 경우
- 다음의 의심이 있을 경우
 - 완제품으로부터 배출되고
 - 배출된 물질이 인간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성이 있을 경우

■ 이미 등록된 물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제57조 (부속서 XIV에 포함되는 물질)

- CMR category 1 or 2 (Directive 67/548/EEC)
- PBT(Persistent, Bioaccumulative, Toxic),
vPvB(very Persistent and very Bioaccumulative)
(근거 규정: 부속서 XIII)
- 기타 내분비계 장애 물질 등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

등록 대상 물질 확인/등록 절차 예 2 (Article(완제품))



감사합니다.